

KMI

북한해양수산물리뷰

2023년 3호
SEP 30 2023

발간년월 2023년 9월 30일(2023년 3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김종덕 총괄 윤인주 감수 홍성걸

발행처 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

자료문의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TEL +82-51-797-4790 FAX +82-51-797-4759

www.kmi.re.kr

목 차

기획 칼럼

02

김정은 시대 북한법령 개정의 함의

류지성(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해양경제 관련 법령 개정 추세

채수란(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 전문연구원)

정책 동향

17

북-중-러 밀착과 해양수산물 협력 전망

이기완(창원대 국제관계학 교수)

北 리뷰

24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황주희(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북한 알기

27

남·북한 해양경찰 역할 및 조직 비교

김영태(해양경찰청 경비국 경사)

北 소식

32

북한 언론 해양·수산물 기사 (7~9월)

NK news 북한 해운·항만 기사 (7~9월)

진희권(부산대 통일한국연구원 연구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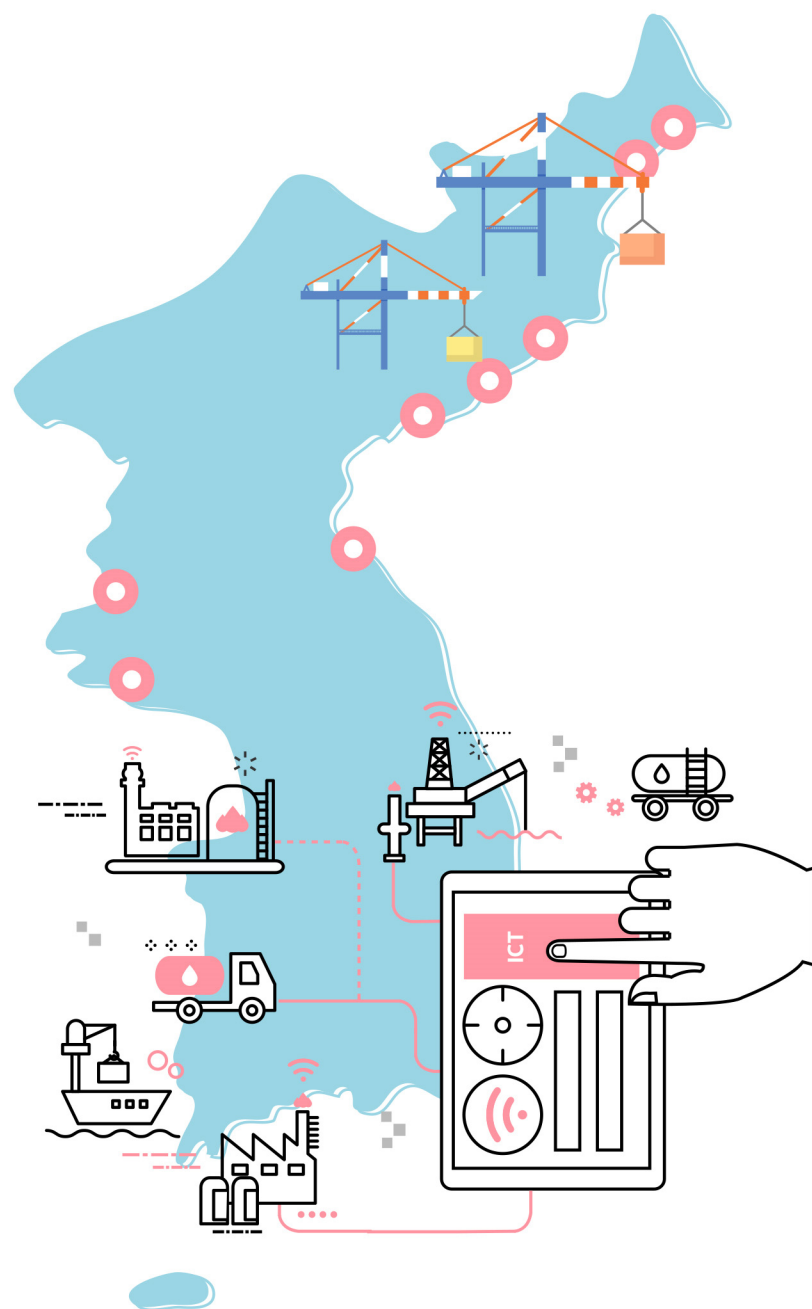
북한 통계

39

북한 수산물 가격 7~9월

북한 수산물수출 현황

진희권(부산대 통일한국연구원 연구교수)



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 내용 및 전송 문의 : 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 북방·극지전략연구실
채수란 전문연구원 Tel_051-797-4790, E-mail_9orchid7@kmi.re.kr

※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상기 전화번호 및 메일로 연락바랍니다.

기획 칼럼

김정은 시대 북한법령 개정의 함의

류 지 성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팀장/연구위원)

김정은 시대 북한입법의 특징과 문제의 핵

이 글은 “최근 북한입법의 변화 분석”, 「북한법연구」 제28권, 통일과 북한법학회, 2022.12의 내용을 토대로 수정한 것임.

2023년 현재는 김정은 정권이 집권하고 11년이 지났다. 그동안 북한의 법제는 많은 변화를 보여왔는데 그 특징은 네 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양적 증가이며, 둘째는 입법을 통해 집권의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한다는 것이고, 셋째는 국제사회를 인식하고 있으며, 넷째는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해 법의 제·개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으로 압축하여 설명할 수 있다.

양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법률은 현재 300여 건으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50% 정도가 김정은 정권 11년간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률이다. 북한이 헌법을 1947년 제정하며 지속적인 ‘법제정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11년간의 변화는 괄목할 만한 수준이라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제·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보면 김정은 정권의 집권에 대한 정당화, 권력 공고화, 김일성 일가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 엿보인다는 점이다.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에 형사법제의 개정이나 대외경제분야의 법제 개정은 제재를 피하고 경협을 통해 경제난을 타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며 국제사회에 어필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사회 현안에 대한 문제는 법을 통해 행정적, 사법적 처분의 근거를 남기고자 하는 것으로서 가령 대규모 코로나 감염증에 대해서 기존의 “전염병예방법”이 있음에도 “비상방역법”을 개정하여 대응한 것을 들 수 있다.

북한에서 주장하는 ‘사회주의 법치국가’는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의 법치국가와 다른 철학적 바탕과 양상을 보이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취하고 있는 법치주의의 방식을 외견상이나마 취하고자 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정상 국가로의 면모를 보이며 장기간에 걸친 대북제재의 회피, 국가이미지 개선을 취하면서도 동시에 김정은 집권의 공고화를 꾀하는 전략으로 풀이할 수 있다. 또한 김정은은 비상체제로 평가할 수 있는 선군사상과 결별하

기획 칼럼

여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정상적인 헌법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위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입법의 절차가 불투명하며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다는 점, 입법이 필요에 따라 단시간에 개정이 되면서 입법의 품질이나 밀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입법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알기도 어렵고, 문제가 있는 입법에 대해 사후적인 통제장치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이다. 물론 ‘신소청원법’이 있지만 본래적인 의미로서의 규범통제장치인 위헌심사제도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과연 북한사회에서 주민이 재판소에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 등을 살펴볼 때 비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입법은 법이 정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장식적인 기능을 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리라 본다.

즉, 김정은 정권에서 이루어진 북한의 법 제정사업은 법의 지배(rule of law)라기보다는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를 강화해 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실질적 법치주의가 아니나, 형식적 법치주의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헌법의 개정

김정은은 2012년 집권 이후 2012년, 2013년, 2019년에 세 차례 헌법을 개정하였는데 2012년에는 김정일에 대한 명칭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칭하며 김정은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하였으며 헌법 서문에 핵보유국을 명시하였다. 2013년에는 종전 11년이었던 교육제도를 12년제로 바꾸었다. 2019년 헌법개정의 주요 골자는 헌법에서 선군사상을 삭제하여 비상체제와의 결별을 선언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통치가 정상적인 체제라는 점과 새로운 국가 목표를 제시하여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였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당에서 군으로, 군에서 국무위원회로 권력의 중심을 이동시켰고 지도이념의 변화를 꾀하였다. 동년 2차 개정에는 국무위원의 권한을 강화하도록 일부 조항을 보완하고 국무위원회의 법적 권능도 강화하였으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을 규제하는 내용을 수정보충하였다.

한편, 헌법의 규범력과 관련하여 2012년에 제정된 법제정법 제45조는 “헌

기획 칼럼

법은 최고의 법적효력을 가진다. 모든 법문건은 헌법과 저촉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 북한 헌법 제1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라고 규정하여 당의 정책이 헌법에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북한의 헌법은 당과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지키는 프롤레타리아독재의 무기로 설명¹⁾된다. 그러나 북한 “법제정법”은 헌법이 최고의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설명²⁾하고 있으며, 김정은 집권의 정당성을 헌법에 투영함으로써 외형상으로는 법치주의를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헌법은 당의 정치에 종속되지만, 최고 법률로서 집권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투영하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져 왔고 이러한 흐름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의 활성화

상술한 바와 같이 북한의 입법에서는 권력 공고화의 양상이 엿보인다. 우선 헌법 제100조의 개정을 통해 국무위원장을 최고 영도자로 규정하면서 통치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하위 규범인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서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법의 힘을 동원한다. 대표적으로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 8월에 제정한 비상방역법은 보건의료체계가 빈약한 북한이 주민 간 감염을 체제의 위협이 될 만한 중대한 사건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존의 감염병에 대한 법률로서 ‘전염병예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율 밀도를 높이고 코로나 사태에 특화된 특별한 입법 목적을 가진 특별법을 제정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기존의 전염병 예방법이 진단, 검병, 격리 등 보건의료적 조치에 관한 규정 이 주된 내용이었다면 비상방역법은 더욱 포괄적이며 국가 시스템적인 대응을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이 법을 계기로 사회체제를 국가비상체제로 전환하였기 때문이다.³⁾ 이 법률은 보건의료체계를 선진화하거나 개별 보건의료 체계의 정비를 통해 사태에 대비한 것이라기보다는 외국인의 출입국 제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벌금 등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여 사회를 봉쇄하고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서의 특수성을 가진다. 비상방역법뿐만

기획 칼럼

아니라 여타 법률에서도 동일한 특징은 나타나는데 체제를 위협하는 요소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강경한 제재와 함께 처벌의 수위를 높이거나 법률을 제정하여 대응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최근 제정법률로서 혁명사적사업법, 마약범죄방지법, 단위특수화 본위주의 반대법, 청년교양보장법, 허풍방지법, 핵무력정책(소위 ‘핵무력 법제화’) 등을 들 수 있다.

법제정비

2012년 김정은 집권 이전에 북한의 법률을 형식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장이나 절의 구분이 없었고 조 제목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12년 이후 제정된 법률을 보면 장, 절의 구분과 조 제목을 다는 등 외형상 남한법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가진다. 내용적으로도 기존의 선언적 규정이나 지도적 규정에서 벗어나 실체적, 절차적 규정을 보완하여 입법 밀도를 높이고 있다. 2012년은 김정은 집권이 시작되는 해이며 ‘법제정법’이 제정된 해로, 형식적 부분의 정비는 법제정법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인권법제의 정비

북한의 인권 문제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가 짙어지며 민감한 문제가 되었다. 북한의 인권관련 법제정비사업 양상은 양면성을 지닌다. 즉, 북한은 체제수호의 관점에서 주민 통제를 강화하고 자유권적 기본권을 탄압하는 법률을 제정하며 사회 복지적 측면의 사회권 보장 강도를 높이는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국제사회에 대한 반응으로 보이는데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지적에 대해 체제 안보적 관점에서 상당히 위협적인 요인으로 인식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우리식 인권’이라는 논리를 채용, 인권 보편주의를 버리고 인권 상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지적에 대해 ‘우리식 인권’을 논리와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의식을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은 국가 주권을 강조함으로써 인권 문제는 곧 국가 주권 내의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기획 칼럼

간섭은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위배됨을 주장하고, 이는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요구에 대한 반박의 논거로 활용된다. 결국, ‘인권’은 바로 ‘국권(國權)’인 것이고, 국가의 자주권을 떠난 인권이란 있을 수 없다는 논리로 연결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주민통제법률과 남한문화 유입 차단

김정은 집권 이후 가장 눈에 띄는 점 가운데 하나는 주민 통제를 강화하였다는 점인데 이는 물리적인 통제와 사상통제라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물리적인 통제는 국경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탈북 실패에 대해 처벌을 강화⁵⁾함으로써 탈북자의 감소를 불러왔고 이에 더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중국과의 국경통제를 강화하며 최근 탈북자가 급감하고 있다. 즉, 탈북을 북한 체제 유지에 대한 중대한 위협요인으로 보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사상통제는 1974년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이 원칙은 헌법이나 로동당 규약보다 상위에 있는 규범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인민반 제도 등으로 사회적인 사상 통제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법률에서도 사상통제는 광범하게 규정되어 있다.

최근 김정은 집권 이후 남한 미디어 시·청취는 북한 사회에서 문제가 되면서 당국에서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주민 저변에 확산하고 있는 남한문화를 통제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 ‘MZ세대’들의 남한문화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적 시도가 드러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2020년 12월에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고, 2021년 9월, 북한의 청소년 세대를 겨냥한 ‘청년교양보장법’을 제정하여 사상을 통제하고 남한문화 접촉을 막으려 하고 있다.

국제사회에 대한 인식

북한은 기후변화 등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는 보편적인 문제 중에서 특히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반응하고 있다. 특히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국

기획 칼럼

제한경협약에 가입하고 2021년 6월에는 ‘자발적 국가 검토(Voluntary National Review: VNR)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국내 법제의 정비도 관측되고 있다. 가령, ‘산림법’에서는 산림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유형별로 보호의 정도와 방법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자연환경보호에 대한 주민의 책무를 강조하고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규정을 설치하였다. 산림법뿐만 아니라 북한의 환경관련 법률에서는 국제협력에 관한 조항을 설치하고 2021년 제출한 VNR에서도 환경오염에 대한 목표치를 국내적 이행 시와 국제적 협력 시의 달성도를 달리 표기하여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을 요청하는 속내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2018년 습지보호 조약인 ‘람사르 협약’(Ramsar Convention)에 가입하여 평안남도 문덕 철새보호구와 함경북도 나선 철새보호구 등 2곳을 람사르 지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⁶⁾ 그리고 2019년에는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에 가입⁷⁾하여 대외무역 부문의 법제에도 국제시장의 룰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김정은의 정책 기조가 ‘우리식 경제관리’에서 국제시장 메커니즘의 활용으로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⁸⁾

체제유지

김정은 정권기 북한은 내부 안정화와 함께 국제화를 꾀하고자 하면서도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여, 주민의 국제화 인식 등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체제유지를 위한 입법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특징적인 법률로서 “혁명사적사업법”은 혁명사적을 격상시키는 이미지를 구축·강화하여 김정은 우상화로 이어가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위특수화·본위주의반대법”⁹⁾은 비법적인 기관조직금지, 통계질서위반행위금지, 대외경제, 항무감독질서위반행위금지, 법제도, 사건약화 행위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데 이것은 북한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에 대한 당국의 고민을 법정하여 처벌의 근거를 두고자 하는 입법목적이 엿보인다. “청년교양보장법”은 명목상 청년중시정책을 표방함으로써 김정은의 애민 정신을 강조하고 선전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법의

기획 칼럼

규율 내용을 보면 사회주의 생활기풍확립, 반제계급의식무장, 고상한 도덕 기풍확립, 조국보위로서 인민군대에 성실하게 봉사할 것, 청년에 대한 학교교양, 가정교양, 사회교양에 관한 사항과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기풍을 확립할 것을 청년에게 요구한다. 특히 동법률 제41조는 청년들이 금지해야 할 행위를 열거하고 있는데 살인, 강도, 강간, 성불량행위, 미신행위, 마약 사용, 사기, 폭력, 이색적인 말투나 노래, 춤을 하지 않을 것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의 소위 MZ세대가 과거 북한의 사회질서와 통제에 저항적인 성향을 보이고 기존의 사회주의 양식 및 기풍 등에 대한 사고가 기성세대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추측하게 해준다. 북한 정권은 이러한 청년세대의 사상과 행동양식 등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허풍방지법은 규정 내용으로 보아¹⁰⁾ 북한 사회가 경제 및 각 부분 사업 전반에 걸쳐 허위나 조작에 따라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북한당국의 대응 방향은 법률제정으로 주민에게 경고하는 효과와 함께 관련 공무원과 담당자에게도 처벌의 근거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1) 송인호, 통일법강의, 법률출판사, 2015, p. 125.
- 2) 북한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법학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71, p. 681.
- 3) 김수연·김지은, “비상방역법 제정을 통해 본 북한의 코로나-19대응과 향후 협력방안”, 통일과 법률 제48호, 법무부, 2021, p. 79.
- 4) “력사와 현실은 인민대중의 인권을 지키자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견결히 수호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나라와 민족이 예측되면 인민대중도 노예의 처지를 면할 수 없고 국권을 잃으면 인민대중도 인권을 유린당하게 된다. 국가의 자주권을 떠난 인권이란 없다.” 승재순·로영, 로동신문, “참다운 인권을 옹호하여”, 1995. 6. 24.
- 5) 데일리NK, “김정은 집권 후 북송 탈북민 처벌 강화. 구금 시설 환경 열악”, 2020.9.16. 기사. <https://www.dailynk.com/%EA%B9%80%EC%A0%95%EC%9D%80-%EC%A7%91%EA%B6%8C-%ED%9B%84-%EB%B6%81%EC%86%A1-%ED%83%88%EB%B6%81%EB%AF%BC-%EC%B2%98%EB%B2%8C-%EA%B0%95%ED%99%94-%EA%B5%AC%EA%B8%88%EC%8B%9C%EC%84%A4-%ED%99%98/> 최종검색일 2022.12.10.
- 6) 연합뉴스, “북한도 습지보전 란사르협약 가입...문덕·라선 철새보호구 지정”, <https://www.yna.co.kr/view/AKR20180316061700009>, 검색일: 2022.12.1.
- 7) CISG는 국제적 계약법에 관한 협정으로서 유엔통일매매법이라고 한다. 협약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상관습을 성문화함으로써 무역거래의 법률적인 장벽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으로 1980년에 제정되고 우리나라는 2004년 2월에 가입하였다. ; 위키백과검색https://ko.wikipedia.org/wiki/%EA%B5%AD%EC%A0%9C_%EB%AC%BC%ED%92%88_%EB%A7%A4%EB%A7%A4_%EA%B3%84%EC%95%BD%EC%97%90_%EA%B4%80%ED%95%9C_%EC%9C%A0%EC%97%94_%ED%98%91%EC%95%BD, 검색일: 2022.12.2.
- 8) 장원규, 북한 입법동향 분석-북한의 대외무역법제 분석과 전망: CISG의 영향과 관련하여, 통일법제 연구 17-19-②, 한국법제연구원, 2021, p. 30.
- 9) 제2조 정의규정에 따르면 “단위특수화, 본위주의는 특수행세를 하면서 국가관리체계와 법의 통제밖에서 안하무인격으로 놀아대는 로골적인 치외법권적행위이며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이익만을 내세우면서 나라의 경제발전에 지장을 주고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반국가적, 반인민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 10) 경제계산에서의 허풍방지(제2장), 농업생산정형에서의 허위보고, 암시, 조작 금지(제3장), 사회전반에서의 허풍방지(제4장)

기획 칼럼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해양경제 관련 법령 개정 추세

채 수 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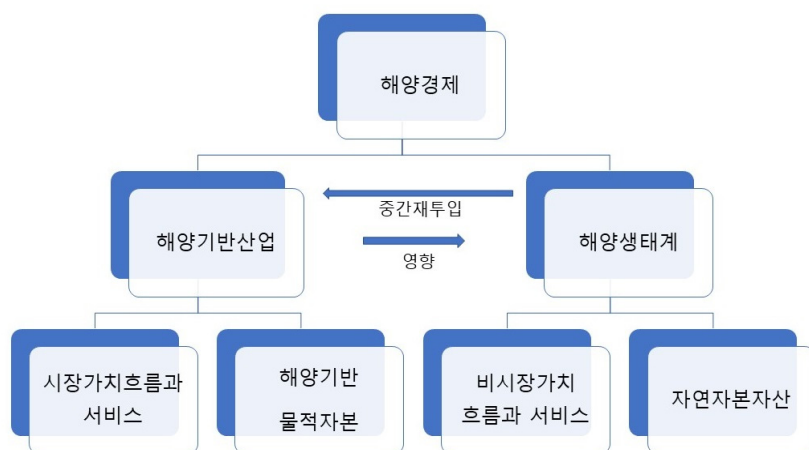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해양경제의 정의와 범위

해양경제라는 용어는 영국, 일본, 중국, 미국, 노르웨이 등과 같은 해양 국가를 중심으로 발전·사용해왔다. 국가마다 해양경제의 정의와 범위에 차이가 있는데 본 고에서는 국제기구가 정의하는 해양경제의 의미를 알아보고, 이어서 한국이 규정하는 해양경제의 정의와 산업 범위를 알아보고자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해양경제를 <그림 1>과 같이 설명한다. 해양경제는 해양을 기반으로 한 해양산업과 해양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총합을 말하는 것으로, 가령 해양산업은 해양생태계로부터 수산물과 같은 중간재를 받아 발달하며 선박은 폐·오수를 방류하여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준다.¹⁾

<그림 1> 해양경제의 개념



자료: OECD(2016)

이 글은 “북한법제 기초연구 IV: 북한의 산업법제 연구 - 해양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23. 발간 예정인 글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기획 칼럼

OECD는 해양산업의 범위를 해양기반 전통산업과 신흥 해양기반 산업으로 나눈다. 해양기반 전통산업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해운·항만·수산업과 같은 산업이며, 신흥 해양기반 산업은 연안 풍력에너지, 조력·파력 에너지, 해양안전, 해양바이오 등 해양생태계에 기반한 산업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신흥산업이다.

<표 1> 해양산업의 범위

해양기반 전통산업 (Established ocean-base industries)	신흥 해양기반 산업 (Emerged ocean-base industries)
• 어선어업 • 수산가공식품업 • 해운 • 항만산업 • 조선업 • 연안 석유 및 가스탐사 및 생산 • 해양제조 및 건설업 • 해양관광 • 해양비즈니스 서비스 • 해양 연구개발 및 교육 • 준설	• 해양양식업 • 심해수, 석유 및 가스개발 • 연안 풍력에너지 • 조력 및 파력 에너지 • 해저 금속 및 광물 자원 개발 • 해양안전 및 감시 • 해양 바이오 기술 • 첨단 해양제품 및 서비스 • 기타

자료: OECD(2016)

다음은 한국의 해양수산업 정의와 분류를 살펴보았다. 한국은 해양산업을 법령상 정의와 표준산업분류상 정의로 나누고 있다. 전자에 따르면 「해양수산발전기본법(2023년 3월 28일 시행)」 제3조(정의) 2호에 “해양수산 자원이란 개발·이용이 가능한 해양생물자원·해양광물자원·해양에너지·해양관광자원 및 해양공간자원 등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그리고 같은 조 3호에 “해양수산업이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보전·개발·이용에 관련된 산업으로 다음의 산업을 말한다”라며 아래의 표를 제시한다.²⁾ 국제기구와 한국이 정의하는 해양수산업의 차이는 국제기구가 신흥 해양기반 산업이라고 분류한 해양에너지, 해양환경·해양생태계 관련 산업의 경우 현재 해양수산업에 포함되어 있고, 소금제조산업을 별도의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획 칼럼

<표 2>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의 해양수산업 정의

구분	해양수산업 범위
가	수산자원의 채취·포획·양식·가공·유통과 관련된 산업
나	해운업, 항만건설·운영업 등 해양물류 및 해상교통과 관련된 산업
다	해저 또는 해수(해양심층수를 포함한다)로부터 해양광물을 탐사·채집·추출·제련(製鍊)·생산하거나 이를 위한 시설·장비의 개발·운영과 관련된 산업
라	해양에너지의 개발·이용과 관련된 산업
마	해양시설물 및 해양공간을 건설·설치·조성하거나 이를 위한 시설·장비의 개발·운영과 관련된 산업
바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복원과 관련된 산업
사	어촌·해양관광, 해양레저스포츠 등 해양관광·레저와 관련된 산업
아	해수를 직접 또는 정제·가공하여 이용하거나 소금을 제조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
자	그밖에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수산발전기본법, <https://www.law.go.kr/>

후자에 따르면 한국의 해양수산업은 2018년 통계청 승인으로 9개 해양수산업 특수분류체계로 나누어졌다.³⁾ 여기서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는 해양 폐기물 처리 및 정화복원업, 해양수산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해양수산물 금융 및 보험업, 해양수산협회 및 단체, 수산물 요리 전문점을 포함하고 있다.⁴⁾ 본 고에서는 <표 3>의 해양수산업의 9개 특수분류체계에 따라 북한의 해양정책과 해양산업 법제의 구성을 살펴보았다.

<표 3> 한국의 해양수산업 특수분류체계

구분	대분류 산업명
해양수산업	• 해양자원 개발 및 건설
	• 해운·항만업
	•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
	• 수산물 생산
	• 수산물 가공
	• 수산물 유통
	• 해양수산 레저·관광
	• 해양수산 기자재 제조
	•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

출처: 통계청, 해양수산업 특수분류, 2018

기획 칼럼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해양정책

현대 법치주의 국가는 모든 행정 활동이 입법화된다는 측면에서 북한의 해양정책을 살펴보았다.⁵⁾ 북한은 육해운성과 같은 특정 부처가 해양수산업 정책을 수립·발표하지 않아, 당대회 내용과 언론보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해양정책을 파악해보았다. 먼저 해운·항만·조선업 부문이다. 북한당국은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어항, 연안항보다는 대외경제의 통로가 되는 무역항과 무역선박을 중심으로 한 해운의 활성화, 원산항을 세계적인 수준의 항으로 개선할 것을 하였다. 또,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육·해운 부문의 활성화를 언급하며 무역집배선대를 새롭게 갱신하고 배운영을 다종화·다양화하며 무역항의 하부구조를 보강하고, 해사분야의 현대화·과학화·정문화 수준을 높여 해사사업을 세계적인 수준에 올리라고 지시하였다.

다음으로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분야는 전국적인 양어장 건설, 해수면 양식 활성화, 해조류 및 수산물 가공 활성화 정책을 내세웠다. 해양수산 레저·관광 정책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건설이다. 북한은 한국인, 중국인 관광객을 모집하고자 하였으나 대북제재로 자재 수급이 어려웠고,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사업이 중단되는 등 큰 부침을 겪었다. 이후 해양수산 기자재 제조 분야는 어선·어구 현대화사업을 꾸준히 외치고 있으며 그 외 농경지 조성을 위한 대대적인 간석지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다.

<표 4> 해양수산업 대분류 체계에 따른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해양정책

구분	대분류 산업명	북한의 해양정책
해양 수산업	해양자원 개발 및 건설	-
	해운·항만업	• 무역항 중심의 개발 • 원산항 개발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조선업)	• 무역선박 현대화
	수산물 생산	• 전국적으로 양어장 건설 • 해수면 양식 활성화(바다가 양식사업소 수확량 늘리기)
	수산물 가공	• 해조류 가공 및 젓갈 가공 시작
	수산물 유통	-
	해양수산 레저·관광	•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
	해양수산 기자재 제조	• 어선어구 현대화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	-
	그 외 분류	• 대대적인 간석지 조성사업

출처: 제7, 8차 노동당 대회 및 노동신문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기획 칼럼

마지막으로 2021년 북한이 발표한 자발적 국가 검토(Voluntary National Reviews)에 따르면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내부적 국가발전목표(National Development Goals: NDGs)와 통합·연계하여 이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북한은 국제사회에 공언(발표)한 것처럼 해양자원 보호를 국가정책으로 삼고 해양자원 보호 및 증식계획을 실행 중이다.⁶⁾

북한의 해양경제 관련 법제 구성

북한의 해양 관련 산업법은 1970년대 김일성의 교시 형태로 존재하다가 1980년대 중국의 개혁개방과 국제기구·협약의 가입에 영향을 받아 제정되기 시작했다. 제정 이후 북한의 해양 관련 산업법은 김정일 시대 몇 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이념적 색채를 지우고 국제조약을 폭넓게 받아들였다. 해양 관련 산업법은 외국과 해상운송 등을 위해 국제협약·국제조약을 받아들여야 하므로, 다른 법에 비해 북한의 이데올로기·정치적 영향을 적게 받은 법규 영역이라는 특징이 있다.

<표 5> 해양수산업 분류체계에 따른 북한의 해양수산업 법 구성

구분	대분류 산업명		북한법
해양 수산업	총괄		해사감독법
	해양자원 개발 및 건설		재생에너지법
	해운		해운법, 해상집수송법, 항무감독법, 해사소송관계법, 수로법, 배길표식법, 다른나라배대리업무, 무역집배용선중개법
	항만업		항만법, 갑문법, 항무감독법
	선박	일반	배등록법
		안전	배안전법
	선원		선원법
	수산물 생산 (채포, 양식, 소금생산)		수산업, 양어법, 소금법
	수산물 가공		수산업, 양어법, 소금법,
	수산물 유통(수출)		무역법, 사회주의상업법
	수산자원 보호와 관리		수산업

출처: 한덕훈(2014), p. 95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기획 칼럼

북한의 해양 관련 산업 법은 <표 5>와 같이 전통 해양산업을 중심으로 구비되어 있으며 해운 중심으로 잘 갖추어져 있다. 반면에 다른 분야는 법이 세분화되지 못한 채 몇 개의 법이 모든 분야를 다루고 있다. 가령 수산 부문은 수산법·양어법·소금법이 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은 물론 자원보호, 자원조성, 건강한 레저문화 조성, 오염방지까지 모든 내용을 규정한다. 이 외 북한 해양자원 개발 및 건설에 관한 법이 부재하여 식량안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신해양산업 분야에 관심·정책·기술을 가질 여유가 없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해양경제 관련 법제 개정 추세

김정은 정권 상반기 5년간(2012~2016) 법령 개정 추세

북한은 김정은 정권 들어 적극적인 법 제정사업을 벌이며 입법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그 가운데 새로운 해양 관련 산업법을 제정하기도 하는 등 거의 모든 해운·항만법의 개정을 단행하였다. [해사소송관계법], [항무감독법], [무역집배용선중개법], [다른나라 배대리업무법], [소금법]은 2011~2015년 사이 처음 제정된 법이다.

김정은 정권 상반기 5년의 법령 개정은 형식적인 면에서 법의 구성을 체계화하는데 주력하였다. 가령 배안전법에 있던 <다른 나라 배의 검열>에 대한 내용을 해사감독법으로 옮기거나,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는 식이었다. 그리고 기존의 법은 장, 절, 조 제목이 없었지만, 2012년 이후 제정된 법은 장, 절의 구분은 물론 조 제목을 다는 등 한국법과 유사한 형태를 지니기 시작했다.⁷⁾

다른 특징은 국제규범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법조문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고, 2014~2015년에는 행정의 효율화, 간소화 방향으로 법을 정비하였다.⁸⁾ 단, 북한의 [소금법]은 예외적이었다. 2014년 처음으로 제정된 소금법은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원칙에 따른 ‘소금 생산량 증대’의 목적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국가계획기관의 관리·감독·통제에 따라 소금생산량을 계획하여 소금이 유실되지 않고 생산을 증대하는 내용으로 소금법을 제정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의 [소금산업진흥법]의 경우 소금산업의 육성을

기획 칼럼

위해 염전원부 허가·신고·품질관리에 중점을 둔다면 북한의 소금법은 ‘생산량 증대’가 주목적이었다. 이는 북한에서 해양산업법이 가장 정치적 영향을 덜 받고 국제화된 영역이지만 근본적인 정치·경제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김정은 정권 하반기 6년간(2017~2022) 법령 개정 추세

김정은 정권 하반기 법령 개정은 그 모습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2019년 이후 질적인 변화를 이루며 기존에 없었던 [해난사고처리법]이 2019년 제정되는 등 안정규제 강화, 바다오염방지 규제 강화, 해양 조사연구 강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였다. 또 국제조약 가입 이후 국제사회의 규범을 국내법에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2021년 [항만법] 개정에는 25조(오염방지시설), 41조(오염방지)에 항에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수단을 갖추도록 하여 환경보호 관련 내용을 대폭 포함하였고 42조, 50조에 해난사고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였다. 2020, 2022년 개정된 [해사감독법]은 해사안전과 해양환경보호 규정이 포괄적으로 보충되었다. 배가 건조된 후 시운전검사를 규정화하고 국내·국제항해배의 정기검사를 추가해 운항의 안전성을 강화하였다. 8장(배에 의한 오염방지)은 조항을 늘려 기준을 강화하였다. 2019년 개정된 선원법에는 국제해사협약의 수준에 맞는 선원교육을 할 것, 재교육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2020년 개정된 [배안전법]은 20조(검사에서 합격한 배의 운항과 관련한 증서)검사에 합격한 배는 증서 유효기간이라도 연차, 중간, 갱신검사를 받도록 규정하였고, 36조(최소안전정원수의 보장)는 안전한 배운행을 위해 선박의 안전 정원수를 보장하고 그렇지 못하면 행정적 책임지도록 변경하여 항해의 안전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였다.

2019년과 2021년 수정보충한 [환경보호법]에도 환경오염에 대기, 토양, 물과 함께 바다오염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였다. [바다오염방지법]은 2014, 2016년, 2020년 개정하며 국제해사기구(IMO) 선박의 유해방오시스템 사용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Harmful Anti-Fouling Systems on Ships, 2001)에 가입하고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내용을 바다오염방지법에 반영하였다. 단, 2021년 소금법 개정은 예외적이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원산제염소 등에서 지하초염수를

기획 칼럼

생산한다며 이를 10대 발명품이라고 할만큼 소금산업이 국가의 육성산업이었다.⁹⁾ 이러한 지하초염수 소금발 확대조성을 위한 내용이 2021년 개정의 골자였다. 3조(소금발조성원칙), 4조(소금생산확대원칙)에 지하초염수에 의한 소금생산을 적극 늘리라고 개정하였다. 역시 소금법의 개정 목적은 생산량 증대였다. 결론적으로 정권 하반기의 해양산업 법제 개정 방향은 해양산업 육성보다는 해양생태계 보호·유지·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마치며

바다라는 공간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모두가 공유하는 ‘공생적 협력 공간’이라는 특성을 보인다. 한 단체,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양환경, 해상안전과 같은 이슈가 해결되고 지켜지지 않는다. 앞으로 지속가능한 바다의 이용과 보존(SDG14)을 위해서는 전 세계가 바다의 이슈를 관심있게 지켜보는 초국경적인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IMO 등의 국제기구는 선박의 안전한 항행과 깨끗한 바다를 지키기 위한 국제적 보편성과 통일성을 가진 규범을 전 세계가 일원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¹⁰⁾

바다는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작은 이슈가 발생하더라도 초국경적인 이슈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도 이와 같은 바다의 특성을 인지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하며 보편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 안전규제강화, 바다오염방지, 해양조사연구 강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북한은 앞으로 바다가 공생적 협력공간이라는 사실에 더욱 공감하고, 제도적 통일이 주는 유익함을 인지해 국제적 제도를 국내로 적극 도입해야 한다. 단편적인 제도 개정이 아닌 실행력 있고 투명한 제도를 구축할 때 비로소 북한은 바다의 안전을 지키고 해양경제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1) OECD, “The Ocean Economy in 2030.” <http://dx.doi.org/10.1787/9789264251724-en>, 검색일: 2023. 9. 1.
-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수산발전기본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B4%EC%96%91%EC%88%98%EC%82%B0%EB%B0%9C%EC%A0%84%EA%B8%B0%EB%B3%B8%EB%B2%95>, 검색일: 2023. 9. 1.
- 3) 통계청, “해양수산업특수분류 개정결과 보고”, http://kssc.kostat.go.kr/ksscNew_web/kssc/common/CommonBoardList.do?gubun=1&strCategoryNameCode=055&strBbsId=searr&categoryMenu=014, 2018, 검색일: 2023. 9. 1.
- 4) 장정인·정수빈·김태진·김성은·박희대·이헌동·고병욱, “KMI 동향분석 VOL.13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9.
- 5) 한상우, 법제자료_정책의 법제화, 법제처. 2010.
- 6) 최규빈·최원근·김형렬·문경연·윤인주, 북한의 SDGs의 이행 현황 및 지표분석, 통일연구원, 2022.
- 7) 류지성, 최근 북한입법의 변화분석, 북한법연구 Vol. 28, 2022.
- 8) 채수란, 북한의 해운·항만법제 면화연구, 세계지역학회 40(4), 2022.
- 9) 연합뉴스, 北 소금공업국, 올 첫 소금 생산 착수...“땅속에서 백금 캐자”, <https://www.yna.co.kr/view/AKR20230228096300535>, 검색일: 2023. 9. 1.
- 10) 유진호, 북한 선박안전체계 현대화 지원형 남북협력모델에 관한 연구, 2019, 법제처, p. 165.

정책동향

북-중-러 밀착과 해양수산 협력 전망

이 기 완

(창원대 국제관계학 교수)

국제안보환경 변화와 한반도

최근, 국제안보환경은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으며, 한반도 정세뿐 아니라 남북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국제안보환경의 변화는 국제적·동북아·한반도 수준에서 개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듯하지만, 이와 같은 변화는 개별적인 수준에 국한되지 않은 채 복합적인 연계성을 가지며 전개되고 있다.

2022년 2월에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 안보지형의 불안정성 심화와 미·러 갈등의 확대를 초래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인도·태평양 전략 대 일대일로(一帶一路), 세계은행(WB)·아시아개발은행(ADB) 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과 맞물리면서 국제질서의 불안정성을 한층 심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안보 변화는 2021년 3월부터 현재까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에 대한 중·러의 반대와 2023년 9월 1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 개최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 간 관계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3각 대립 구도의 심화로 이어져 동맹의 결박 현상과 적대 게임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이러한 국제정치적 상황은 한반도 안보 불안을 한층 심화시키며, 남북관계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공세적 핵 정책에 맞서기 위해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고 일본과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자, 북한은 한·미·일 3국의 대응을 보면서 무력도발의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중·러와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동안 한반도 정세 변화는 남북교류협력 및 해양수산 협력에 부침을 초래

정책동향

하였다. 6·15 남북정상회담과 10·4 남북공동선언과 함께 일시적으로 활기를 띠었던 해양수산 협력 사업도 5·24 조치와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인해 중단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9·19 군사분야 합의서 등을 계기로 해빙되는 듯했지만, 2019년 2월 제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재차 답보상태에 빠져들었다.¹¹⁾

이를 고려할 때, 한반도 정세 및 북·미 관계의 획기적 전환이 없이는 남북 교류협력과 남북 해양수산 협력의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하겠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에 따른 해양수산 협력방안과 추진 전략을 세분화하여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양수산 협력 사업의 추진 조건

북핵 문제의 획기적 전환과 북·미 관계 개선

남북 해양수산 협력 사업 추진은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 간 협상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핵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며, 결국 해양수산 협력 사업은 상당한 구조적 한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미국은 북한의 완전하며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가 이루어져야만 체제보장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해제도 가능하다는 ‘선(先) 핵 폐기, 후(後) 체제보장’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대북 접근 방식에는 행정부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¹²⁾ 트럼프 행정부(Donald Trump) 하에서는 하향식(top-down) 접근 방식에 의한 북핵 문제의 해결에 방점을 두었다면, 바이든(Joe Biden) 행정부에서는 실무자 중심의 상향식(bottom-up) 접근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가 아니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접근 방식의 변화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¹³⁾ 이러한 접근 방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북 정책은 CVID를 기본 축으로 하여 추진한다는 ‘원칙’에는 이견(異見)이 없다.

정책동향

이에 대해 북한은 체제보장에 대한 확실한 보장과 함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및 미국의 독자 제재 해제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2019년 2월 제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단지 자국의 완전한 비핵화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보고 공세적인 대미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사실은 2021년 제8차 당 대회에서 핵 무력의 고도화 강조, 2022년 4월 25일 열병식에서는 핵 무력의 기본 사명 확대,¹⁴⁾ 그리고 2022년 9월 ‘핵무력정책법’¹⁵⁾에서 자의적 판단에 의한 핵 무력 사용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은 2018년 4월 20일 ‘핵 및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지만,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 간 갈등적 대결 국면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중 갈등 및 미·러 갈등의 확대 속에서 중·러 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⁶⁾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와 관련하여 중·러 양국은 2016~2017년에는 6회에 걸쳐 대북 제재에 찬성했지만,¹⁷⁾ 2021년 3월 이후에는 단 한 차례도 찬성하지 않은 채 안보리 회의 자체를 보이콧하며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북·미 간 갈등적 상황과 함께 미·중 갈등 및 미·러 갈등이 완화된 지 않는다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해제는 물론 미국의 대북 정책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남북관계 개선과 추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남북 해양수산 협력 논의와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진척되어야 하며, 중·러 양국이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일치된 입장을 표명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향후 북·미 양국이 북핵 문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러 양국의 비핵화 정책 견지는 매우 중요하다. 만약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이를 지렛대로 삼아 군사적 도발의 수위를 한층 높여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되면 북·미 관계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냉각으로 이어져 한반도 안보 불안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동향

북한의 군사적 도발 중단과 남북관계 개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진척되고 북·미 관계 개선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남북 해양수산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 국민적 지지가 없다면,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해양수산 협력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에는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향후 남북 해양수산 협력과 관련하여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 중단이 절실히 요구된다. 남북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될 때마다, 북한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행하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북한의 약속 불이행은 우리 국민에게 북한을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하는 요인이 된다. 가령 2018년 9·19 군사분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해안포 사격 훈련, 개성공단 내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지속하고 있다. 일련의 사건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고 남북 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는 대북 불신감을 확산시킨다.

이러한 부정적인 대북 이미지의 확산은 향후 북·미 관계와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북한과의 해양수산 협력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우리 정부·해양수산 관련 단체·종사자들은 북한에 대한 의구심을 지우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감정은 남북 해양수산 협력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과거처럼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다는 불신으로 확대되어 협력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의 군사적 도발 중단과 합의 이행은 남북한의 신뢰 회복과 부정적인 대북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데 있어 중요하다. 앞으로 북한의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남북 간 신뢰 회복은 물론 남북 해양수산 협력 사업의 진전과 이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정책동향

남북 해양수산 협력 추진방안

2018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 속에서 그동안 중단 상태에 빠져 있던 남북 해양수산 협력 사업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 듯했다. 하지만 2019년 2월 제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 실패 이후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남북 해양수산 협력 사업에 대한 열기도 빠르게 식어갔다.

이미 언급한 바 있듯이 남북 해양수산 협력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 해결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 즉 남북 해양수산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싶다는 기대와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는 커다란 장벽이 있다. 이러한 ‘기대와 현실의 딜레마’로 인해 북·미 간에 비핵화 협상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비핵화까지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또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둘러싼 입장 및 방법의 차이로 중단과 협상의 과정이 되풀이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는 남북 해양수산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을 세분화해야 한다. 즉 북·미 관계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수준별 상황에 맞추어 추진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3단계로 세분화하여 수립해야 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남북관계에는 뜻하지 않는 돌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낙관적인 접근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해양수산 협력 사업의 내용과 범위도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것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표 1> 남북 해양수산협력 사업의 3단계 추진 전략

	1단계	2단계	3단계
구분	북·미 간 협상 중단 단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현상 유지	북·미 간 협상 진척 단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일부 해제	북·미 간 협상 성과 단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해제
목표	해양수산협력 사업의 종합적 검토	해양수산협력 공동 사업의 환경적 기반 구축	해양수산협력 공동 사업의 정치적 기반 구축
실행 계획	-기존 남북 해양수산협력 사업의 장단점 분석 -남북한의 수산업 현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 ¹⁸⁾ -해양수산협력사업에 대한 국민 지지 획득방안 모색 -남북해양수산협력 지원센터 설치 관련 내용 검토	-북한 지역의 수산자원 조성 및 양식 시설 지원 -어업 기술의 이전 -수산물 가공설비 지원 -남북해양수산협력 지원센터 설치	-북한 해역 공동 조사 -남북 공동어로구역 설정 및 공동 조업 추진 -북한 해역의 남측 어선 입어 -북한 수산물 남한 반입 활성화 -남북해양수산협력 지원센터 본격 운영

출처: 저자 작성

정책동향

지금처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중단되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향후 북·미 관계 및 남북 관계가 개선될 때를 대비하여 해양수산 협력 사업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세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수산 협력 사업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남북한의 수산업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해양수산 협력사업으로 남북한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찾아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종래의 해양수산 협력 사업이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남북한 해양수산 종사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추진되었는지, 아니면 그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해양수산 협력 사업의 대상을 제한하여 추진해 나가야 한다. 북·미 간에 비핵화 협상이 개시된다고 하더라도 성과를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정치적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여 북·미 관계 및 남북 관계가 개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도 실현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단계적,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남북한이 가지고 있는 적대적 불신은 지난 세월 속에서 주조된 것이므로 몇 차례의 고위급 회담 또는 남북공동성명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지난 시기에 남북한 사이에 체결된 합의서나 협정의 일부는 이러한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장밋빛 합의’에 불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점은 남북 해양수산 협력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과연 북한이 남한과 해양수산 분야 협력을 통해 얻으려는 것이 서해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등과 같은 정치·군사적 문제인지, 아니면 단지 수산 관련 인프라 구축과 어로·양식 기술 확보 등과 같은 수산업에 국한된 경제적 문제인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해양수산 관계기관, 민간기업, 종사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해양수산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관계기관, 민간기업, 어업 종사자 등이 남북 해양수산 협력 사업을 통해 얻으려는 이익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이들 사이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논의할 수 있는 일명 ‘해양수산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관계가 개선 조짐을 보일 때 남한이 북한 측에 어떤 사업을 중심으로 해양수산 협력을 제안할 것인지에

정책동향

대한 일치된 사업 방향을 공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기관, 민간기업, 어업 종사자 사이에 사업 방향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갈등과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

전망

최근, 중·러 정상회담, 북·러 정상회담, 그리고 북·중·러 고위급 회담으로 인한 북·중·러 3국의 밀착은 국제 질서와 한반도 정세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특히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답보상태인 상황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중·러 양국의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 반대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부추겨 한반도 안보 불안을 한층 악화시킨다.

중·러 양국은 북한과 무기 협력 및 북·중·러 3국 연합훈련으로 한·미·일 3국 공조 체제에 맞서려는 ‘신냉전’의 대립 구도를 조성하기보다는 미국과의 비핵화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 즉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만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시점에서 북·미 관계가 언제 개선될 수 있을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향후 북·미 관계가 개선되고 남북 관계가 변화할 때를 대비하여 단계별 추진 전략에 따른 지속 가능하고 현실성 있는 남북 해양수산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 등을 수립해 두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남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낮은 단계의 해양수산 협력 사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의 개선 정도에 비례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사업의 내용과 방향을 검토하여 결정해 두어야 한다. 긴 분단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장밋빛 사업’은 깨지기 쉬운 유리잔과 같으며, 상대방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공허한 메아리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 11) 박준모,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남북수산협력” KSFBA 50권 4호, 2019, pp. 14-17.
- 12) 이기완, “북핵 문제의 쟁점과 과제”; 이기완, 동북아 국제질서와 한국, 창원대 출판부, 2021, pp. 72-74.
- 13) 이기완, “북핵문제와 북·미·중 관계, 그리고 한국의 대응” 한국지방정치학회보 제8집 1호, 2018, p. 124.
- 14) 핵 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하는 데 있지만, 상황 여하에 따라서는 핵 무력이 전쟁 방지에만 속박되지는 않을 것이다.
- 15) 핵무력 정책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북한에 대한 핵 공격 또는 공격 임박, 북한 지도부에 대한 공격 또는 공격 임박,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 주도권 장악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 16) “중러공동성명, 美 북한의 합리적 우려에 행동으로 답해야” 서울신문, 2023. 3. 22.
- 17)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기완, 2021, pp. 64-65.
- 18) 박성래, “북한의 수산업 실태와 국제기구를 통한 수산분야 협력 방향” KSFBA 제46권 3호, 2015, pp. 90-92.

北 리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 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정육식 저: 서해문집, 2023)

황 주 희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그라운드제로에서 북한 읽기

최근 남북은 ‘단절의 시간’을 겪고 있다. 1971년 시작된 남북대화는 2018년 12월을 끝으로 열리지 않고 있다. 북미대화 역시 2019년 10월에 멈춰있으며, 지난 4월에는 군 통신선을 포함한 남북 직통선이 끊겼다. 남북의 소통창구가

닫힌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대화와 협력의 길로 다시 나올 것인가?

이 책은 평화 연구자이자 활동가라고 밝힌 저자 ‘정육식’의 2023년 7월 신간이다. 그는 1999년 평화네트워크를 설립하고 2021년부터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을 겸임하고 있다. 20여 년간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군축, 반핵, 평화체제를 연구해오고 있는 저자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진정시키려는 노력의 하나로 ‘과거의 북한’을 보려는 시각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하며 책의 서두를 시작한다. 더불어 국방, 경제 대남관계, 외교 등 국가전략 전반에서 보이는 새로운 북한을 직시하고 대북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북한, 무엇이 달라졌는가? 저자는 북한이 30여 년 동안 추구하던 ‘북미 적대관계에서 평화관계로의 전환’을 포기하고 안보는 핵으로, 경제는 자력갱생으로, 외교는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성과를 노리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러한 변화는 2019년 하노이 노딜과 판문점 회동의 실패에서 시작되었으며 변화의 확실한 근거는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변화’라고 꼬집는다.

北 리뷰

저자는 북한의 달라진 최근 행보에 대해 안보, 경제, 외교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첫째, 안보적 측면이다. 북한은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핵무력은 북한의 국체’임을 천명하고 2022년 9월 핵 무력 법제화를 단행했다. 저자는 북한이 불가역적인 핵보유국임을 선언한 것은 북한이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핵 무력에 방점을 두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비핵화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둘째, 저자는 북한이 경제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군비 부담이 적은 핵 개발에 집중하면서 재래식 군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 분야에 집중한다는 것은 일종의 ‘안보의 경제성’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또, 유엔과 미국의 경제제재(economic sanctions)에 대한 해법을 ‘제재 해결(Without Sanctions)’에서 ‘제재와 더불어(With Sanctions)’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경제제재는 더 이상 핵 포기를 압박하거나 거래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가치가 없음을 지적한다.

셋째, 외교적 측면으로는 대화의 문을 닫아건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중심으로 성과를 얻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 역시 2020년 이후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추가 제재에는 반대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상황을 한·미·일 vs 북·중·러 대결 구도의 현실화, 고착화로 평가하면서 북한이 패권국인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포기하고 다극화된 세계질서에서 생존과 번영을 도모하는 편으로 전략을 변경했다고 평가한다.

과거의 북한에 갇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자는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길 촉구한다. 이에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0.9%로 평가하는 한국은행의 추정치와 북한이 유엔에 제출한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VNR, 2021)에서 스스로 밝힌 2015~2019년 연평균 경제성장률 5.1%의 차이를 지적한다. 더불어 북한이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는 농촌진흥청, FAO의 추정치와 북한이 밝힌 곡물 생산량에서 나타나는 100만 톤의 차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질문을 던진다. 저자는 새로운 북한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보와 더불어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북한의 실상에 접근해야 하며 기존의 주관적인 확신이나 북한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잠시 내려놓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北 리뷰

이 책은 현재의 북한을 제대로 직시하고 있는지와 함께 변화한 북한을 상대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새로운 북한을 상대하기 위한 질문을 독자에게 던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책은 한반도가 전화(戰火)에 휩싸이지 않도록 남북이 대화에 나서야하며, 최소한의 남북 소통 채널이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우리는 북한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남북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이 책은 ‘단절의 시간’을 겪고 있는 남북 관계에 경종을 울리며 또 다른 시각을 제공한다. 입체적인 시각에서 북한을 조망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북한 알기

남·북한 해양경찰 역할 및 조직 비교

김 영 태

(해양경찰청 경비국 경사)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11년 만에 성사된 남북정상회담 이후 ‘통일’이라는 키워드는 사회 전반의 모든 영역에 급속도로 빠르게 스며들었다. 통일이 된다면 정치·사회·경제·문화·예술·종교·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와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통일과정에서 치안유지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통일한국의 치안 시스템이 안정화되려면 남북한 치안 기관의 정확한 역할과 조직 비교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분단 이후 7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남한과 북한의 치안 체제는 너무도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왔고 조직체계, 장비, 인력 구성 등에서 큰 이질성을 가지고 있다. 남한의 치안 업무는 해양경찰청과 경찰청이 영토와 영해로 관할권을 이원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범죄를 예방 및 수사하며 주요 산업시설을 경비하는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각국의 치안 기관은 체제, 정치, 지리, 문화에 따라 다양한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비슷한 치안기관이 존재할 뿐 완벽하게 다른 나라의 치안 기관을 대체할 수 없다. 하물며 북한은 해양경찰이라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전제를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해양 관련 법령과 분산된 해양치안기관을 분석하여 남북한의 해양치안 기관을 비교하였다.

해양경찰청은 정부조직법 제43조 2항의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둔다’에 의거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해 경비수역에서 해양주권 수호를 목적으로 해양안보 및 해양치안 확보,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의 보호를 위한 해양경찰권을 행사한다. 해양경찰과 관련된 해양법을 업무분야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이 글은 “통일한국 해양경찰의 창설방안: 북한 해양치안기관과의 통합의 중심으로, 고려학교 북한학과 석사학위논문”의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것임.



<표 1> 해양경찰의 업무 분야별 법률

구 분	법 률
해양경비	해양경비법, 선박통제규정, 영해 및 접속수역법 등
해양수사	형법, 형사소송법,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등
구조 및 안전관리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수상레저 안전법, 해사안전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선박입출항관리법, 선박법, 선박안전법, 해운법, 도선법, 항만운송사업법, 선박안전조업 규칙, 어선법,어촌·어항법 등
해양환경보호	해양환경관리법, 수산업법,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등

출처: 저자 작성

북한의 해양 재난법령1)

북한의 자연재난 관리와 관련된 법률은 최고인민회의 상위원회 정령 76호 (2014년 6월 27일)로 통과된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을 기본으로 개인의 생명과 국가 재산의 보호에 대한 지침을 담고 있다. 위 법은 재난 위험 관리를 위한 6개의 장2)과 63개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북한법에서 해상경비에 관한 법률을 찾아볼 수 없었으나 남한의 해양경찰청과 관련된 북한의 해양법3)을 해양수사, 구조 및 안전관리, 해양환경보호로 분류할 수 있다.

<표 2> 북한의 해양재난 법체계 및 주요 내용

구분	법률	주요 내용
재난 총괄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	· 법의 기초, 재난 위험 감소 계획, 재난유발자연 현상과 조기 경보의 관찰, 재난관리를 위한 대비 및 자원 보급, 재난 대응 및 복구, 재난관리의 지도와 제어 등 6장 63개 조문으로 구성
해양 환경 보호	바다오염 방지법	· 바다오염방지사업에서 규율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바다의 수질과 자원을 보호(1조) · 바다오염방지사업을 잘하는 것은 바다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방도(2조)

출처: 저자 작성

북한의 해양 관련 법령4)

먼저 [해사감독법]은 질서와 제도를 엄격히 세워 해상에서 사람의 생명과 배의 안전을 보장하고, 배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는데 이바지한다. 북한의 [해사감독법]은 안전 분야와 해양환경보호 분야에 중첩되어 있다. [바다오염 방지법]은 북한의 바다오염방지사업에서 질서와 제도를 엄격히 세움으로써

북한 알기

바다의 수질과 자원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환경보호법]은 총 5차례 수정보충되었고,⁵⁾ 총 4장 55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는 환경보호의 기본원칙, 제2장은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제3장은 환경오염방지, 제4장은 환경보호에 대한 지도통제 등으로 구성되었다. [환경보호법]에서는 환경보호 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이를 위한 기술적 현대화와 과학연구 사업을 발전시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도록 하는 환경보호 원칙을 담고 있다. 그리고 [환경보호법] 제7조에서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화학무기의 개발과 실험, 핵무기 사용으로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3> 남·북한의 해양 관련 법률 비교 분석

남 한	분 야	북 한
· 해양경비법 · 선박통제규정	해양경비	-
· 형법 · 형사소송법	해양수사	· 형법 · 인민보안단속법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 수상레저안전법 · 해사안전법 · 선박안전법	구조 및 안전관리	· 해사감독법 · 배길표식법
· 수산업법 ·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보호	· 바다오염방지법 · 환경보호법 · 국토환경보호단속법

출처: 저자 작성

남북한의 해양 관련 법령 비교

다음으로 남·북한의 해양 관련 법률을 비교·분석하였다. 남한에는 해양경찰청과 해군, 해수부 등이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해양치안을 업무별로 담당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은 해양치안기관의 임무나 행정권한을 법률에 정확하게 부여 하지 않고 있다. 제한된 정보로 인해 남·북한 해양치안기관을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는 내각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당-국가체제 속에 모든 정책과 제도는 조선노동당의 조직지도부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당에 권력이 집중되면 행정체계가 경직된다. 북한 해양치안 분야는 전담 기관이 부재하며, 치안 업무가 다양한 정부기관(사회안전성, 국가보위성, 북한해군 등)에 분산되어 있어 유기성이 떨어진다.

남·북한 해양치안체제는 태동부터 이념적으로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또는 김일성 주체사상에 의해 치안체제를 확립했기 때문에 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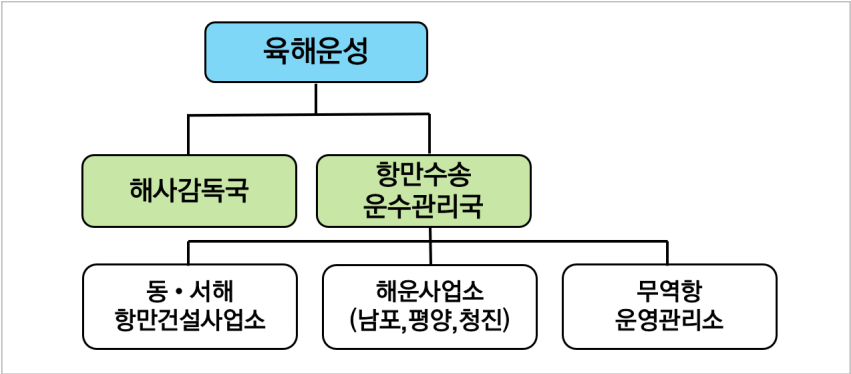
북한 알기

에 대한 감시 내지 감독자의 역할을 하는 통제 중심의 구조로 발전해 왔다. 반면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에 입각해 치안체제가 작동하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에 주안점을 두고 발전해 왔다.

또, 남·북한의 해양치안체제는 조직구조, 장비, 계급, 인력의 선발, 그리고 승진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 한국은 해경과 경찰청이 치안업무를 이원화하여 해양에서의 경찰권은 해경이 독점적으로 수행하지만, 북한은 해군이 해상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며 해안경비대가 해안선을 따라 경비업무를 전담하는 구조이다. 그리고 북한의 해양수사는 사회안전성이 전담하고 조선인민내무군⁶⁾도 부분적으로 해양치안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안전성에서 해양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수사국, 호안국, 경비훈련국이다. 북한은 해양에서 발생한 사건을 일반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사국은 북한 [형법]에서 규정한 일반범죄를 담당한다. 호안국은 자연에서 발생한 재해·재난 사건과 같은 해양오염방제 업무를 맡고 있다.

육해운성은 우리나라의 해양수산부와 비슷한 정부기관이며 수산성은 별도로 있다. 북한의 해운 업무는 교통성 소속의 해운관리국으로 시작해, 1964년 교통성이 철도성과 교통운수위원회로 개편되면서 발족한 해운총국이 관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1967년 해운총국이 육운총국과 통합되어 육해운성으로 승격되었고, 1972년 제6차 내각에서 다시 해운부로 독립되었다가 1977년에 육해운부 소속 해운총국으로 분리되었다. 현재는 내각의 육해운성이 해운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육해운성 산하에는 해사감독국과 항만수송운수관리국, 그 아래에 동·서해 항만건설사업소, 해운사업소, 무역항 운영관리소가 있다.

<그림 1> 육해운성 조직도



출처: 저자 작성

북한 알기

국토환경보호성은 북한의 내각 소속 중앙 행정기관으로 환경오염과 대기, 수질에 대한 사무를 관장한다. 우리나라 환경부와 비슷한 국토환경보호성은 환경보호와 국토관리를 맡아 해양오염을 감시·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남·북 해양치안 기관을 분야별로 비교해 보았다. 북한에는 독립된 해양경찰기관이 존재하지 않고, 해양경찰청의 업무가 다양한 기관에 분산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만일 남북한 경계수역에 해양경찰의 업무가 발생한다면, 한국의 해경은 이들 네 개 기관 중 어떤 기관과 업무협의를 해야 할지 의문점이 생긴다.

결국 앞으로 북한은 한반도 해양 이슈 해결을 위해 해군, 사회안전성, 육해운성, 국토환경보호성이 조직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이들 기관을 통합할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보안의 문제로 북한의 해양 관련 행정부처의 모든 정보를 얻기는 어려우나 추후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세부적인 분석이 가능하기를 기대해 본다.

< 표 4> 남·북한 분야별 해양치안 조직 현황

남한	분야	북한
· 해경(치안) · 해군(안보) · 육군 해안경비대(안보)	해양경비	· 해군(2사령부, 16개 전대) · 해안경비대(5개여단, 3만명) · 조선인민내무군(11만명)
· 해경 · 해양수산부(어업관리단)	해양수사 및 단속	· 사회안전성(수사국) · 각 도의 인민보안서
· 해경 ※ 해군은 지원조직	구조 및 안전관리	· 육해운성 · 각 도의 선박 관리국 ※ 해군은 지원조직
· 해경 · 환경부 · 해양수산부	해양 환경보호	· 국토환경보호성 ※ 선박사고에 의한 기름 오염은 육해운성과 협력

출처: 저자 작성

- 1) 강택구. “통일 대비 북한지역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자료 구축과 남북협력 방안연구 (Ⅰ)”, 한국환경연구원, 2016, pp. 55-62.
- 2) 6개의 장은 제1장 법의 기초, 제2장 재난 위험 감소 계획, 제3장 재난 유발 자연 현상과조기 경보의 관찰, 제4장 재난관리를 위한 대비 및 자원 보급, 제5장 재난 대응 및 복구, 제6장 재난관리의 지도와 제어이다.
- 3) 북한의 해양법은 수로법, 해사감독법, 바다오염방지법, 해운법, 환경보호법, 해상침수송법, 수산법, 배길표식법, 국토환경보호단속법 등이 있다.
- 4) 강택구. “통일 대비 북한지역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자료 구축과 남북협력 방안연구 (Ⅰ)”, 한국환경연구원, 2016, pp. 55-62.
- 5) 1995년 3월 4일, 2000년 7월 24일, 2005년 4월 19일, 2011년 3월22일, 2011년 8월 23일 총 5회.
- 6) 북한은 김정은 체제가 출범을 준비하던 2010년, 인민보안부 산하에 있던 조선인민경비대를 내무군으로 개편하는 등 사회 치안 조직을 강화함.



북한 언론 해양·수산 기사 (2023년 7~9월)

진 희 권

(부산대 통일한국연구원 연구교수)

<2023년 7월>

보도 매체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노동 신문	7월 4일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 점령을 위한 투쟁속에 주요부문들에서 상반기 계획 초과완수	-상반기 수산물 생산계획 102% 완수 -서해의 문덕, 운천, 한천, 가마포 수산사업소와 동해의 송도원, 신포, 청진, 통천, 홍원 수산사업소에서 높은 생산 실적을 기록
조선 중앙 통신	7월 8일	함경남도, 평안남도에서 수산자원 증식	-함경남도 ‘성천강방류어업사업소’, ‘단천남천방류어업사업소’에서는 연어 등 900여만 마리의 치어 방류. ‘홍원수산사업소’와 ‘락원수산사업소’에서는 대구와 가재미 치어 생산에서 성과 -평안북도에서는 올해 280여만 마리의 치어를 방류. ‘태천군쏘가리종어사업소’에서는 수만 마리의 쏘가리치어를 방류
노동 신문	7월 12일	오늘은 해양의날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해양자원을 적극 개발 이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 -해양환경을 보호하려면 해양오염과 해양재해 등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과학적 대책을 세워야 하며, 해양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 이용하려면 첨단 해양 과학기술에 기초한 현대 해양산업을 창설하고 확대 해야 함 -해양과학기술 부문 전문가, 기술자 양성체계를 강화 하여 이 부문의 연구사업을 잘해야 함 -당에서는 국가적으로 동·서해안 건설을 통이 크게 내밀어 인민들의 생명안전과 국토를 보호하고 나라 의 해양연선을 해양국의 체모에 맞게 일신할 데 대하여 강조

北 소식

노동 신문	7월 12일	3중3대혁명붉은 기 신창수산 협동조합 초급당위원회 사업경험	-2015년, 2019년, 2023년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한 북청군 ‘신창수산협동조합’의 경험 소개 -협동조합의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양식기술혁명을 결의, 다시마양식에서 기존 ‘드림식양식’을 ‘수평식밀식양식’으로 전환해 다시마 생산성을 3배로 높였음 -지난 10년간 50여 건의 가치 있는 기술혁신, 창의고안을 이루어 수산물생산량을 3배 이상 확대 -올해에 80hp 고깃배 2척을 새로 건조 -능력이 큰 냉동고와 수산물가공장 건설, ‘자연흐름식수도화’를 실현하고 목욕탕을 새로 건설
노동 신문	7월 15일	간석지건설에 선진공법을 적극 도입하자	-간석지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루자면 원가를 줄이면서도 시공속도를 높일 수 있는 선진공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함 -과거 간석지건설 부분에서 ‘육상쇠그물돌자루투석기공법’, ‘큰돌묶음식배투석공법’과 같은 우리식의 독특한 공법을 창조 -간석지건설자들은 알곡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리는데 자신들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뺏속 깊이 새기고 농토를 넓히는 대자연개조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것을 결의
노동 신문	7월 17일	어디서나 양어를 할 수 있다	-어디서나 결심하고 달려붙으면 본때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양어. 양어의 나라로 전변시키려는 당의 뜻을 심장 깊이 새기고 양어를 중단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 -양어에서 물고기 종자와 먹이 문제를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 -앞선 경험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공유, 이전하는 것이 중요
노동 신문	7월 17일	새끼물고기를 적극 방류	-수산성에서 각 도 지방정권기관과 함께 과학기술 성과를 널리 일반화하고 단위에서 제기하는 문제를 적극 풀어나가고 있음 -평양시, 자강도, 황해남북도의 여러 ‘종어사업소’와 양어단위에서 새끼물고기 기르기에서 성과 -‘남포수산사업소’에서는 수십만 마리의 새끼가재미 방류 -‘직하대서양련어종어장’과 ‘고말산대서양련어바다양어사업소’ 등 함경북도의 여러 바다양어 단위에서 새끼연어와 새끼명태를 방류
노동 신문	7월 17일	실리있는 인공어초조성, 수산성 일군들과 나눈 이야기	-각 수산단위에서는 인공어초 조성은 곧 단위의 발전, 나아가서 우리 후대들에게 자원이 풍부한 바다를 넘겨주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인공어초 조성 계획을 무조건 수행해야 함

北 소식

조선 중앙 통신	7월 20일	수산성에서 하반년 수산물고기 점령에 힘 집중	-수산성에서 동·서해안에서 어장탐색의 적중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물고기 잡기에 힘을 집중 -바다가양식사업소에서는 다음 해 생산을 위한 다시 마여름모 배양의 과학기술화, 양식면적 확대 사업을 일정대로 진행 -‘신포수산사업소’ 개건 현대화 공정을 올해 중 끝내는 데 집중 -‘직하대서양련어종어장’ 2단계 공사와 ‘홍원조선소’의 상가선 증설공사, ‘단천선박공장’의 해안방조제 공사 추진
노동 신문	7월 20일	<전국수산자원 보호부문 과학기술 발표회2023> 진행	-<전국수산자원보호부문 과학기술발표회-2023>이 ‘조선자연보호련맹’, ‘수산자원보호협회’의 주최로 7 월 18일, 19일, 수산연구원에서 화상회의방식으로 진행 -수산자원증식분과, 수산자원관리분과로 나뉘어 진행 된 발표회에는 ‘김일성종합대학’, ‘남포수산대학’, ‘동 해수산연구소’, ‘서해바다가양식연구소’를 비롯하여 수산자원보호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교원, 박사원 생, 3 대혁명소조원 등이 참가 -지리정보기술을 이용한 수산자원관리정보체계개발, 조기의 인공번식에 대한 연구, 김과 바스레기의 혼합 양식 방법 등의 논문들이 실천에서 제기되는 과학기 술적 문제를 원만히 해결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음
조선 중앙 통신	7월 22일	평양시의 양어단위들에서 수역마리의 새끼물고기 방류	-‘대동강양어 및 종어생산공급소’에서 기념어, 초어 등 200여만 마리의 치어를 생산해 평양 시내의 여러 양 어단위에 공급 -‘청년두단종어사업소’, ‘삼석종어사업소’, ‘룡성종어 사업소’, ‘강남종어사업소’에서도 많은 치어를 생산해 대동강에 방류 -‘대동강조개양식사업소’에서는 수백만 마리의 변두 조개를 생산

北 소식

<2023년 8월>

보도 매체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조선 중앙 통신	8월 3일	각지에서 논판양어 활발히 전개	-각지 농업부문에서 올해 수천 정보의 논판양어 면적을 조성하고 실질적 성과를 보고 있음 -평안남도에서는 1,000여 정보의 논판양어 적지를 선정하고 수백만 마리의 물고기를 놓아주었음 -함경남도에서는 수백 정보의 논판양어 면적을 조성하고 물고기를 기르고 있음
노동 신문	8월 4일	전국과학기술보급부 문 발표회, 전국육해운부 문 과학기술발표회 진행	-‘전국육해운부문 과학기술발표회’가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조선육해운협회’의 주최로 8월 2일과 3일 ‘령남배수리공장’에서 화상회의방식으로 진행 -《배수리 및 선박건조공정의 현대화》라는 주제로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육해운성 해운과학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의 과학자, 기술자, 교원, 연구사 등이 참가 -선박건조와 현존 짐배들의 성능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하는 10여 건의 논문 발표 -‘유압용접봉피복기제작’과 ‘유수분리장치 국산화’, ‘폴리린산을 이용한 녹방지칠감 개발과 응용’ 등의 제안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
민족 대단결	8월 7일	종합적인 수산물가공기지 (평양대성김가공 공장)	-평양시 락랑구역에 위치, 김가공품을 포함해 수십 가지의 수산물가공품을 생산
노동 신문	8월 9일	혼합양식에서 진일보를 내짚기까지	-혼합양식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로창바다가양식사업소’의 경험 소개 -양식공들의 역량 강화, 양식자재 보장을 바탕으로 성과 창출
노동 신문	8월 10일	지난해보다 많은 새끼쏘가리 방류	-‘태천군쏘가리종어사업소’에서 지난해보다 많은 새끼쏘가리와 수십만 마리의 먹이용 새끼물고기를 태천호에 방류
노동 신문	8월 18일	누구나 자기 몫을 다하게 하는데 생산장성의 열쇠가 있다	-‘문덕수산사업소’의 성과 소개 -사업소는 배수리를 기한 전에 마치고 240hp 철선을 계획보다 앞당겨 건조 상반기 생산계획 완수
노동 신문	8월 19일	의존심을 버려야 길이 열린다	-‘령남배수리공장’의 성과 소개 -용접봉 생산공정 현대화를 바탕으로 선박건조와 수리에서 높은 성과 달성

北 소식

노동 신문	8월 27일	양어의 과학화, 집약화 수준 제고에 모를 박고	-‘청년두단종어사업소’에서 ‘평화먹이’ 생산량 증대와 함께 지렁이서식장을 잘 꾸려 먹이 보장에서 성과 -‘함흥메기공장’는 1,200여 m ² 의 야외못 건설 -‘염주청년양어장’은 올해 210여만 마리의 치어를 생산, 방류 -‘청진시종어사업소’는 100여m ² 의 미생물배양장 건설
노동 신문	8월 31일	수산자원을 보호증식시키기 위한 사업 적극화	-수산성에서 수산자원 보호 증식에 힘을 쏟아, 올해 수천만 마리의 치어 방류 -‘함경북도수산관리국’ 산하 ‘직하대서양련어종어장’은 수 십만 마리의 태평양연어 치어 방류, ‘고말산대서양련어바 다양어사업소’는 명태, 가재미 등 치어 130만 마리 방류 -‘양화수산사업소’는 350만 마리의 치어를 방류
조선 중앙 통신	8월 31일	청년두단종어사 업소에서 새끼잉어를 대동강에 방류	-‘청년두단종어사업소’에서는 올해 200여만 마리의 새끼잉어를 생산하여 120여만 마리를 대동강에 방류

<2023년 9월>

보도 매체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노동 신문	9월 3일	여러모로 좋은 논판양어	-논판양어를 하면 물고기를 비롯한 수생동물이 논에 있는 여러 해충과 어린 잡초를 먹어 병해충과 김이 적어지며, 물고기가 벼뿌리를 들추어주고 배설물은 비료가 되어 벼의 생육에 좋은 작용 -논판양어는 물원천이 풍부하고 많은 비가 내려도 물 이 넘어나지 않는 논을 선정하는 것과 함께 넘어짐견 딜성과 병충해 견딜성이 비교적 센 벼품종을 심고 물 대기와 비료주기를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 -논판양어방식으로는 벼-물고기방식, 벼-새우방식, 벼 -게방식이 대표적
내나라	9월 13일	활기있게 진행되는 담수양어	-전국 각지에서 연간 수억 마리의 새끼물고기를 생산 하여 각 지역의 양어단위들에 보내주고 있음 -‘삼천메기공장’, ‘순천메기공장’, ‘평양메기공장’ 등 메기공장에서는 연간 수천 톤의 물고기를 생산 -‘서흥범안양어사업소’, ‘염주청년양어장’, ‘신흥양어 장’ 등 지역의 특성에 맞게 꾸려진 전국의 양어기지에 서는 기념어, 초어, 붕어 등 온수성 물고기와 칠색송 어, 열목어, 산천어 등 냉수성 물고기, 메기, 열대붕어 와 같은 열대성 물고기를 생산
노동 신문	9월 18일	간석지 조사선 건조	-‘륙해운성’에서 간석지조사선을 건조

北 소식

NK news 북한 해운·항만 기사 (2023년 7~9월)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7월 7일	North Korea's new cargo ships flock to Chinese ports handling iron and coal	-NK Pro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12척 이상의 북한 선박이 석탄·철 관련 중국의 주요 항구로 향해한 것으로 확인 -최근 중국 랴오둥 반도 끝, 다롄 인근에 북한 선박이 다수 출몰.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2일 사이 북한의 최신 화물선 모란봉2(Moranbong2, IMO 8357112)호, 소백수(SoBaekSu, IMO 9054767)호, 사향산1(SaHyangSan1, IMO 9054779)호가 다롄항에 도착 -국제해사기구(IMO) 기록에 따르면, 모란봉2호는 과거 5,211톤급 화물선으로 중국 국적의 '린다8(LinDa8)'호였으나 지난 2022년 4월 북한 '모란봉해운회사'에서 인수 -5,838톤급 소백수호와 5,849톤급 사향산1호는 팔라우 국적의 도요하루(Toyo Haru)와 토미하루(Tomi Haru)호였으며, 소백수호는 2022년 10월 북한의 '소백수해운'에서, 사향산1호는 '사향산해운'에서 2022년 8월 인수 -이 외에 '모란봉해운회사'가 2023년 5월 인수한 모란봉7(Moranbong7, IMO 1017787)호와 '백호7무역회사'가 2022년 6월에 인수한 부양2(PuYang2, IMO 8891297)도 다롄 인근에 정박한 것으로 확인 -중국 룡커우항에도 락원1(RakWon1, IMO 8355786)호, 대동강1(TaeDongGang1, IMO 8672110)호, 금강1(KumGang1, IMO 8358697)호, 무포(MuPho, IMO 8651178)호, 포평(PoPhyong, IMO 8417962)호, 진흥9(JinHung9, IMO 9035967)호 등이 정박
8월 16일	North Korean ship resurfaces near DPRK weapons hub after rare trip to Russia	-NK pro와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6,843톤급의 금야(KUM YA, IMO 9004073)호는 지난 7월 초 러시아 나홋카 항에 미확인 화물을 하역하고 선적 -이후 금야호는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의 트랜스폰더(transponder)를 끄고 잠적했으며, 지난 8월 8일 북한 함경남도 흥남시 인근에서 확인 -러시아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7월 러시아는 북한에 밀가루 877.5톤을 수출하는 등 올해에만 7,300톤의 곡물을 북한에 수출. 이 같은 상황에서 금야호의 항적은

北 소식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군사지원과 그 대가로 지급되는 식량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고 의심 -특히, 금야호가 다시 등장한 흥남은 오랜 역사를 가진 무기 생산 도시이며,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서 필수적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라고 지적. 흥남에는 미사일 엔진 시험 시설, 대형 고체추진 로켓 엔진을 생산하는 17호공장, 흥남비료단지, 본궁화학공장 등이 있음
8월 30일	North Korean company shows off sanctioned tankers, boasts of illicit activities	-북한에서 발행하는 ‘Foreign Trade’에 평양에 본사를 둔 ‘한국미향해운회사’를 홍보하는 기사 게재 -기사에는 선박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채 배수량 7,000 톤과 5,000톤의 화물선, 재화중량(Dead-Weight)의 유조선, 기타 컨테이너 선박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여러 국가와 정기 용선 계약을 체결했다고 언급 -또한, 기사에는 삼정1(SAM JONG1)호와 삼정2(SAM JONG1)호의 사진을 게재하여, 해당 선박을 ‘한국미향해운회사’가 인수했음을 암시 -삼정1호(IMO 8405311)와 삼정2호(IMO 7408873)는 길이 70m, 길이 80m의 비교적 작은 유조선으로, 유엔 안보리와 미국, 유럽연합(EU)은 2018년 두 선박과 당시 등록 소유주였던 ‘한국삼정해운’을 정제석유 선박 간 환적 혐의로 제재를 가한 바 있음 -과거 유엔 북한 전문가 패널로 활동한 바 있는 Maiko Takeuchil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21호와 2270호에 따라 (북한의) 전세 선박과 승무원 서비스는 금지”되어 있으며, 삼정1호와 삼정2호는 “삼정해운 자산으로 자산동결, 입항금지 대상으로 다른 나라 항구에 정박할 수 없다”고 강조. “북한에서 해당 선박이 제재대상 업체의 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유엔이 해당 (선박의) 지위를 변경하지 않는 한 여전히 제재 대상 선박으로 간주”된다고 언급

북한 통계

북한 수산물 가격(7~9월)

(단위: 1kg, 북한 원화)

날짜 (2023년도)	낙지(오징어)				고등어			
	평양	신의주	원산	청진	평양	신의주	원산	청진
7. 9	15,000	15,400	14,600	14,500	20,000	20,500	11,700	11,600
7. 23	15,400	15,700	14,900	14,700	21,000	21,300	11,800	11,700
8. 6	16,000	16,600	15,000	14,800	21,200	21,100	20,000	20,000
8. 20	16,600	17,100	16,000	16,100	20,700	21,000	20,000	19,400
9. 3	17,600	17,900	17,200	17,100	21,400	21,700	21,000	21,200
9. 17	17,700	18,000	17,500	17,400	21,200	21,400	21,000	21,000

날짜 (2023년도)	공치				전어			
	평양	신의주	원산	청진	평양	신의주	원산	청진
7. 9	13,000	12,800	13,100	13,200	12,300	12,000	12,300	12,200
7. 23	13,200	12,900	13,000	12,800	12,100	11,900	12,400	12,400
8. 6	13,500	13,100	13,400	13,200	12,200	11,800	12,300	12,400
8. 20	13,200	12,700	13,100	13,000	12,100	11,500	12,300	12,300
9. 3	13,600	13,200	13,000	13,100	12,300	11,700	12,100	12,100
9. 17	13,800	13,400	13,200	13,200	12,000	11,400	12,200	1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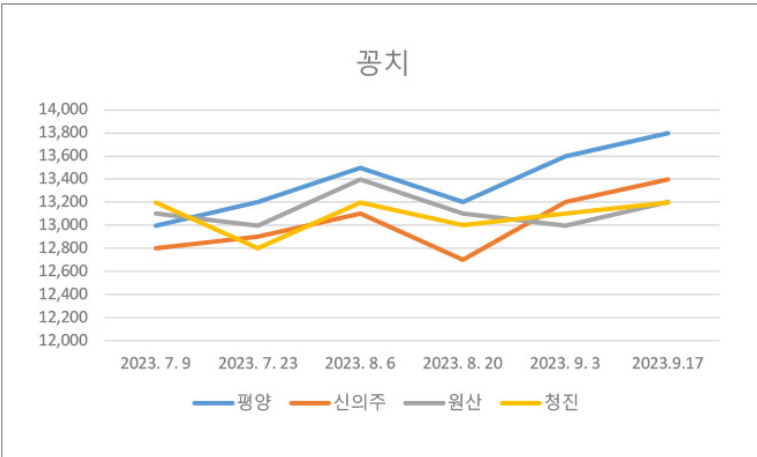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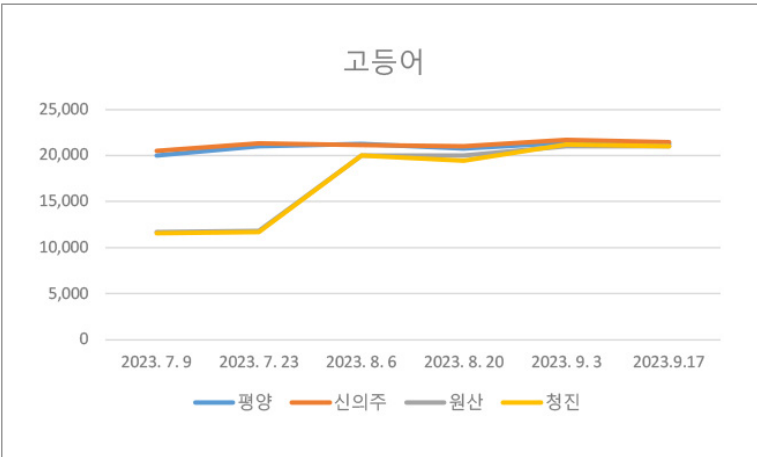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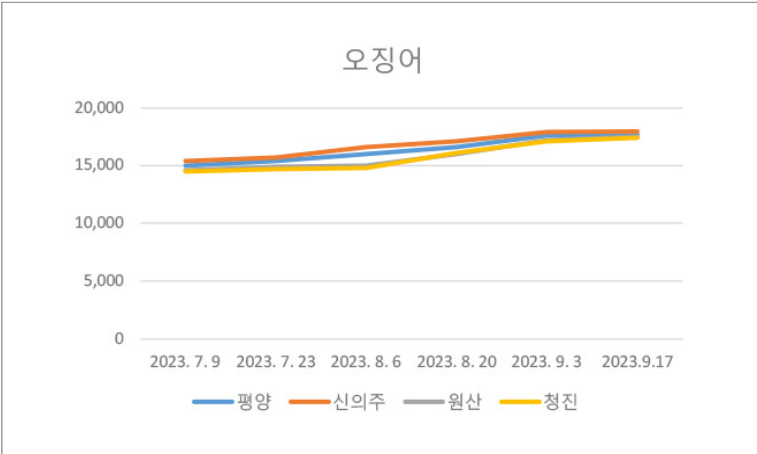
날짜 (2023년도)	송어				바지락			
	평양	신의주	원산	청진	평양	신의주	원산	청진
7. 9	11,300	10,900	11,500	11,700	11,200	11,000	11,200	11,200
7. 23	11,600	11,400	11,700	11,800	11,100	10,900	11,000	11,000
8. 6	11,300	10,700	11,500	11,400	11,400	11,200	11,300	11,200
8. 20	11,000	10,200	11,400	11,500	11,100	10,500	10,600	10,400
9. 3	11,300	10,800	11,200	11,300	11,300	10,700	10,500	10,500
9. 17	11,500	11,100	11,300	11,500	11,000	10,200	10,300	10,200

자료: 데일리NK 제공

북한 통계

북한 수산물 품목별 가격추이(7~9월)

(단위: 1kg, 북한 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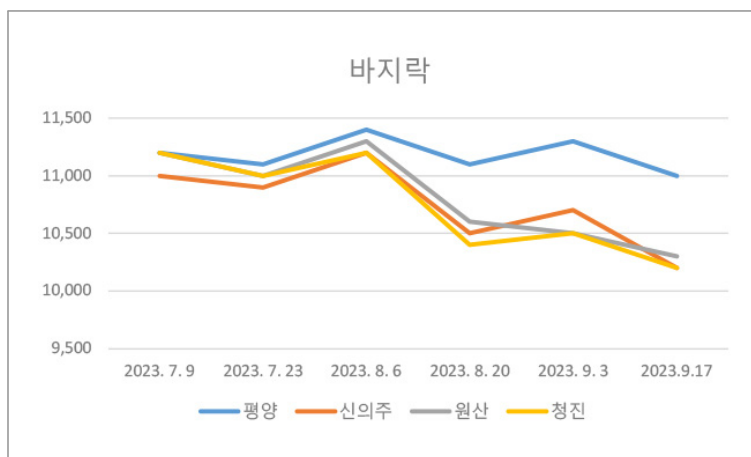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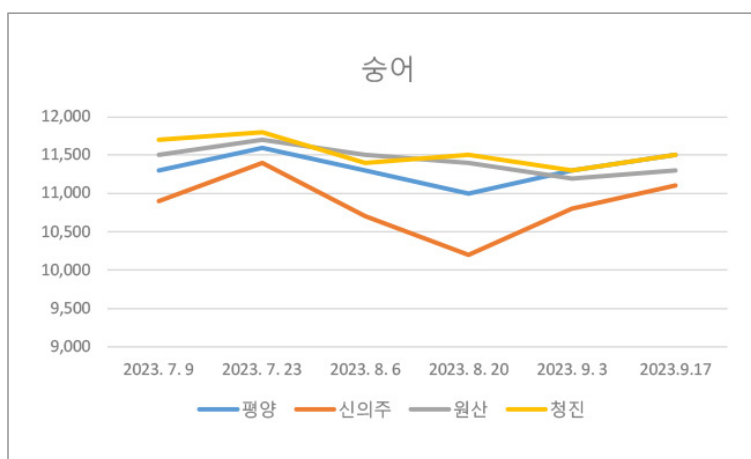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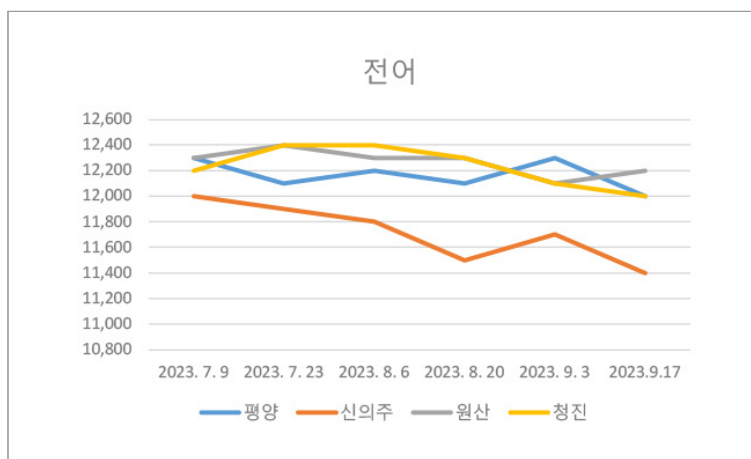


자료: 데일리NK 제공

북한 통계

북한 수산물 품목별 가격추이(7~9월)

(단위: 1kg, 북한 원화)



자료: 데일리NK 제공

북한 통계

북한 수산사업소 현황

진 희 권

(부산대 통일한국연구원 연구교수)

이 글은 “북한 수산사업소 현황과 김정은 시대 변화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vol. 27, no.1, 2023, pp. 65~96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임.

북한 수산업의 주력: 어선어업

수산업의 1차 생산방식은 잡는 어업과 기르는어업으로 나눌 수 있다. 즉, 낚시나 그물, 어선을 이용한 어업과 양식어업으로 구분되며, 이를 다시 바다와 내수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내수면 어업의 생산량은 극히 미미하며, 바다 양식은 자재 및 기술적 한계로 극소수 어종을 제외하고는 성어를 생산하지 못하고 해조류 양식에 치중하고 있다. 북한 수산업 생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바다 어선어업, 바다 해조류 양식, 내수면 양식 분야이다. 내수면 양식의 경우 1990년대 중반부터 정책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나 생산시설 등의 제약으로 바다 어선어업이나 해조류 양식 등에 비해 생산량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결론적으로 현재 북한 수산물 생산의 주력은 바다 어선어업과 바다 해조류 양식이라 할 수 있다. 해조류 양식의 경우 다시마와 미역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환금성이나 단백질 공급의 측면에서 북한 수산업의 주력 분야는 바다 어선어업이라 할 수 있다.

어선어업 생산주체: 수산사업소와 수산협동조합

북한 어선어업 생산주체는 국영 ‘수산사업소’와 ‘수산협동조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한은 1947년부터 어선어업 분야 생산구조의 국영화(수산사업소), 협동화(수산협동조합)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1958년에 현재와 같은 생산구조를 완성했다. 해방정국에서 어선어업 국유화(수산사업소)는 일본인과 친일파 등의 재산을 몰수하는 방식으로, 협동화(수산협동조합)는 개인 어민들을 모아 조합을 구성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1947년 5월, 함경남도에 ‘서호수산사업소’를 시작으로 6월에는 ‘신포수산

북한 통계

사업소', 7월에는 강원도에 '원산수산사업소', '장전수산사업소', '속초수산사업소'가 설립되는 등, 1950년까지 17개의 수산사업소가 조직되었다. 그 후 1982년에는 그 수가 57개로 증가하였다.

수산업협동조합은 1947년 12월 함경북도 경성군 염분리를 시작으로 1948년 96개, 1950년에는 133개가 조직되었다. 북한은 1958년 수산업 협동화 완성을 선포하였는데, 당시 협동조합의 수는 248개였다. 이후 일부 수산업 협동조합 통합, 반농반어업협동조합 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 1959년 수산업 협동조합의 수는 153개로 축소되었으나 1982년에는 그 수가 244개로 증가하였다.

<표 1> 북한의 지역별 수산업협동조합 조직 현황(1982년)

서해(115)							동해(129)			총 계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남포	평양	개성	함경북도	함경남도	강원도	
24	24	32	4	22	5	4	60	44	25	244

자료: 차석칠 외, 『조선지리지전서: 경제지리』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89), p. 235의 자료를 편집하여 저자 재구성

북한 수산사업소 현황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 언론보도 중 '수산사업소' 관련 내용이 포함된 기사 439건을 분석한 결과 총 88개의 수산사업소가 확인되었다. 또한, '수산사업소'의 지도기관이 수산성, 조선인민군, 무역기관으로 분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 지역별 수산사업소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북한의 지역별 수산사업소 숫자 변화

년도	서해(18 ▶ 25)					동해(39 ▶ 62)				총 계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도	남포	미상	함경북도	함경남도	강원도	미상	
1982	8	5	3	2	-	12	18	9	-	57
현재	7	6	5	2	5	18	19	15	10	87

자료: 차석칠 외, 『조선지리지전서: 경제지리』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89), p. 235의 자료를 일부 편집
주: 전체 88개의 수산사업소 중 106호수산사업소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아 위의 숫자에는 빠져 있음

북한 통계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별로는 함경남도와 함경북도에 가장 많은 수산사업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서해에 비해 동해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서해의 비율은 1982년 68.4% : 31.6%에서 현재는 71.3% : 28.7%로 변화하여 동해 쏄림 현상이 과거에 비해 소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서해에 비해 동해의 어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기 때문이다. 1982년의 경우 동·서해 어획량 비율은 92.7% : 7.3%였으며, 이 중 국영 수산사업소의 비중은 95.8% : 4.2%, 수산협동조합은 81.5% : 18.5%였다.¹⁾

북한 수산사업소는 내각 수산성에서 각 도별 ‘수산관리국’을 통해 지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김정은 시대에 들어 ‘조선인민군 수산사업소’가 신설되었으며, 일부 수산사업소는 ‘대경지도국’, ‘대흥지도국’ 등 무역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도기관 분류는 <표 3>과 같다.

<표 3> 북한 수산사업소의 지도기관별 분류

수산성	조선인민군	무역기관	총 계
48(54.6%)	20(22.7%)	20(22.7%)	88

자료: 저자 작성

최근 북한은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를 제시하고 이를 인민 경제의 기본과녁이라하며 해당 부문의 목표 달성을 독려하고 있다. 이 12개 중요 고지에는 알곡, 전력, 석탄 등과 함께 수산물도 포함되어 있다. 수산업을 북한경제의 최우선 과제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12개 중요 고지’에 포함된 것에 보듯 북한경제에서 적잖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이며, 김정은식 ‘애민 정치’를 상징하는 코드 중 하나이기도 하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하는 인민 생활 향상 중 최우선 과제인 식생활 개선의 한 축이기도 하다.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은 ‘조선인민군 수산사업소’를 신설하고 ‘단풍’호 ‘황금해’호 등 표준어선을 보급하며 어선 현대화와 어구 보급 등에 많은 투자를 하였다. 하지만 기대와 투자에 비해 성과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의 수산업 생산구조 상 생산량 확대를 위해서는 어선어업의 정상화가 절실하며, 수산사업소의 역할이 막중하다. 북한의 수산사업소가 김정

은 총비서의 관심과 투자에 부응하고 북한 주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을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1) 차석칠 외, 『조선지리지전서: 경제지리』, p. 237의 기록을 통해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서해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산협동조합의 생산량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심이 얕은 서해의 특성상, 소형어선을 중심으로 근해 어업에 집중하는 수산협동조합의 어로 활동이 동해보다 용이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